

2025년 제2회 KRIC 기후변화 아카데미

배출권거래제 유연성 기제의 개요 및 현황

2025. 02. 11.(화)

사 예 진 주임연구원

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 탄소정책기획팀
syj2@kric.re.kr



Contents

배출권거래제 유연성 기제의 개요 및 현황

CHAPTER 01 유연성 기제의 목적 및 개요

CHAPTER 02 국내 배출권 이월/차입/상쇄 현황

CHAPTER 03 국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 기제 현황

CHAPTER 04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 기제 현황 및 전망

배출권거래법, 동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
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**8개월***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

* 배출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8개월 이내 배출권 제출 의무(개정 2024.02.06./시행 2025.02.07.)

[별지 제4호서식]

배출권 제출 신고서			
법인명			
법인등록번호			
계정대표자명			
법인 주소			
대표 연락처	전화		E-mail
해당이행연도			
인증 배출량			
제출 수량	차입한 배출권		
	배출권		
	상쇄배출권		
	총계		
<p>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1항 에 따라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장 기관장 귀하</p>			

배출권 제출 신고서 내용

사업자 정보


- 법인명, 법인 주소
- 대표 연락처
- 법인등록번호, 계정 대표자명 ※ 등록부(ETRS/ORS) 거래계정

배출량/배출권 정보

- 해당 이행연도 (배출권 제출 대상 연도)
- 인증 배출량
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**3개월 이내**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의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보고
- 차입한 배출권
· 동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할당배출권
- 배출권
· 이행연도의 할당배출권(KAU; Korean Allowance Unit)
- 상쇄배출권
·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상쇄배출권(KCU; Korean Credit Unit)
- 총계(차입배출권 + 할당배출권 + 상쇄배출권)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(약칭: 배출권거래법)에 근거하여
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월, 차입, 상쇄 등 유연성 기제를 활용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

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(약칭: 배출권거래법)
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229호, 2024. 2. 6. 일부개정]

환경부 (기후정책과-제도총괄) 044-201-6590, 6582
국무조정실 (녹색성장지원단) 044-200-2881
기획재정부 (탄소중립전략팀) 044-215-497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21. 9. 24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9. 24.>

- “온실가스”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.
- “온실가스 배출”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.
- “배출권”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이하 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”라 한다)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.
- “계획기간”이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.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이월·차입·상쇄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.

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229호, 2024. 2. 6. 일부개정]

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
-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
-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것
-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것
-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

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

제4조(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은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6.>
 -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-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배출권 제출 유형 (배출권거래법 제28조, 제29조)

1. 이월

배출권을 보유한 할당 대상업체는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,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음

2. 차입

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할 배출권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 수량이 부족할 경우,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일부를 차입할 수 있음

3. 상쇄

할당대상업체는 부문별 관장기관 장에 의해 인증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상쇄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 배출권 제출 시 활용할 수 있음

! 이월/차입 신청서 제출 기한

다음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

- 명세서 제출 후 인증 받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통보일
-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일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'24.12) 등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4차 이행연도에서 5차 이행연도로 배출권 이월 가능

[별지 제5호서식]

배출권 이월 신청서			
법인	법인명		
	법인등록번호		
	계정대표자명		
	법인 주소		
개인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계정대표자명		
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해당이행연도		
이월연도			
이월 수량	배출권		
	상쇄배출권		
	총계		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이월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			년 월 일
신청인:			(서명 또는 인)
환경부장관 귀하			

출처 : 「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5호 서식

배출권(KAU, KCU) 이월 - 할당대상업체

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

3차 계획기간
4차 이행연도('24)

3차 계획기간
5차 이행연도('25)

- 잉여(무상할당량>배출량)업체** : 4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4)과 상쇄배출권(KCU24) 순매도량*의 5배만큼 이월 가능
 ※4차 이행연도의 KAU, KCU를 다른 KAU나 KCU와 교환하거나,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
- 부족(무상할당량<배출량)업체** : 보유한 4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4)과 상쇄배출권(KCU24) 전량 이월 가능
 ※4차 이행연도의 KAU, KCU를 다른 KAU나 KCU와 교환한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
 ※ 단, 할당대상업체 당 총 100톤 미만의 KAU, KCU는 이월 승인 기준과 무관하게 이월 신청 시 승인 허용

! 순매도량 계산

5차 이행연도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(ETRS) 및 상쇄등록부(ORS)에 등록된 '매도량 - 매수량'

! 무상할당량(KAU) 수량 계산

사전할당량 + 추가할당 - 할당취소 ± 권리의무승계 + 전년도에서 이월한 양 - 전년도로 차입한 양 + 다음연도에서 차입한 양

*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 (법 제32조, 시행령 제47조)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'24.12) 등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5차 이행연도('25)에서 4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('26)로만 배출권 이월 가능

[별지 제5호서식]

배출권 이월 신청서			
법인	법인명		
	법인등록번호		
	계정대표자명		
	법인 주소		
개인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계정대표자명		
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해당이행연도		
이월연도			
이월 수량	배출권		
	상쇄배출권		
	총계		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이월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신청인:		년 월 일	
		(서명 또는 인)	
환경부장관 귀하			

출처 : 「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5호 서식

배출권(KAU, KCU) 이월 - 할당대상업체

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

3차 계획기간
5차 이행연도('25)

↓
4차 계획기간
1차 이행연도('26)

- **잉여(무상할당량>배출량)업체** : 5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5)과 상쇄배출권(KCU25) 순매도량*의 5배만큼 이월 가능

※KAU25 및 KCU25를 다른 계획기간의 KAU, KCU와 교환하거나,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

- **부족(무상할당량<배출량)업체** : 보유한 5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5)과 상쇄배출권(KCU25) 전량 이월 가능

※5차 이행연도의 KAU, KCU를 다른 KAU나 KCU와 교환한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

※ 단, 할당대상업체 당 총 100톤 미만의 KAU, KCU는 이월 승인 기준과 무관하게 이월 신청 시 승인 허용

! 순매도량 계산

5차 이행연도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(ETRS) 및 상쇄등록부(ORS)에 등록된 '매도량 - 매수량'

! 무상할당량(KAU) 수량 계산

사전할당량 + 추가할당 - 할당취소 ± 권리의무승계 + 전년도에서 이월한 양 - 전년도로 차입한 양 + 다음연도에서 차입한 양

*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 (법 제32조, 시행령 제47조)

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2, 제28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‘24.12) 등에 따라 **할당대상업체 외 배출권 보유자는 다음 이행연도 및 계획기간으로 배출권 이월 가능**

[별지 제5호서식]

배출권 이월 신청서			
법인	법인명		
	법인등록번호		
	계정대표자명		
	법인 주소		
개인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계정대표자명		
	대표연락처	전화	E-mail
	해당이행연도		
이월연도			
이월 수량	배출권		
	상쇄배출권		
	총계		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이월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		년	월 일
신청인:		(서명 또는 인)	
환경부장관 귀하			

출처 : 「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5호 서식

배출권(KAU, KCU) 이월 - 할당대상업체 외 배출권 보유자

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

3차 계획기간 4차 이행연도(‘24) ↓ 3차 계획기간 5차 이행연도(‘25)	중개회사 자기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한도 범위 내 KAU24, KCU24 * 별도 승인 불필요 ** 기존 20만톤 이월 한도 삭제 → 이월 기준 완화
	제3의 시장참여자 위탁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한도 범위 내 KAU24, KCU24 * 별도 승인 불필요 ** 기존 20만톤 이월 한도 삭제 → 이월 기준 완화
	시장조성자 자기거래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별도 신청 없이 보유분 전부 이월 승인 * 필요 시 회수 처리
3차 계획기간 5차 이행연도(‘25) ↓ 4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(‘26)	중개회사 자기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한도 범위 내 KAU25, KCU25 * 별도 승인 불필요 ** 기존 20만톤 이월 한도 삭제 → 이월 기준 완화
	제3의 시장참여자 위탁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한도 범위 내 KAU25, KCU25 * 별도 승인 불필요 ** 기존 20만톤 이월 한도 삭제 → 이월 기준 완화
	시장조성자 자기거래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별도 신청 없이 보유분 전부 이월 승인 * 필요 시 회수 처리

*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 (법 제32조, 시행령 제47조)

ETRS ORS
공지사항 자료실 지침/법령 FAQ 정보공개

공지사항

게시물 조회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5px;">제목</th> <td style="padding: 5px;">2024년 배출권(KAU23)의 이월 기준 안내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0.8em; margin-top: 5px;">1. 잉여업체의 경우 배출권(KAU23) 순매도량(매도량-매수량)의 3배만큼 이월가능합니다. 2. 부족업체의 경우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. 3. 잉여-부족업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1) 잉여업체: 무상할당량* > 인증 배출량 2) 부족업체: 무상할당량* < 인증 배출량 * 무상할당량(KAU): 사전할당량 + 추가할당 - 할당취소 ± 권리의무승계 + 전년도에서 이월한 양 - 전년도로 차입한 양 + 다음연도에서 차입한 양 4. 향후 배출권 운용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font-size: 0.8em; margin-top: 10px;">다음: 다음글이 없습니다.</p> <p style="font-size: 0.8em; margin-top: 5px;">이전: 2022년 배출권(KAU22) 증권사 이월 신청 안내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 font-size: 0.8em;"> 목록 </div>	제목	2024년 배출권(KAU23)의 이월 기준 안내
제목	2024년 배출권(KAU23)의 이월 기준 안내	

예시) 배출권등록부(ETRS) 및 상쇄등록부(ORS) 공지사항 - “2024년 배출권(KAU23) 이월 기준 안내”

※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잉여업체의 경우, **순매도량의 5배***를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부족업체의 경우, **전량 이월** 가능하게 함

* 2024년도 > 3배 → 2025년도 > 5배

※ 이월 가능 수량 산정 시, 계산한 무상할당량을 기반으로 잉여업체 또는 부족업체 여부를 판단한 뒤, 순매도량에 따라 이월 가능 수량 산정 혹은 전량 이월

※ 배출권거래중개회사/제3의 시장참여자/시장조성자의 경우, 배출권(KAU24) 및 상쇄배출권(KCU)을 이월 신청 시 **별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함**

* 2024년도 > 증권사의 경우 총 1,000,000 tCO₂-eq 이월 가능 → 2025년도 > 보유한도 범위 내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

! 2025년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이월 가능 수량

① 무상할당량(KAU24) 산정

= 사전할당량+추가할당-할당취소±권리의무승계+
전년도에서 이월한 양-전년도로 차입한 양+다음연도에서
 차입한 양

② 잉여업체 및 부족업체 여부 판단

- 1) 잉여업체 : 무상할당량 > 인증 배출량
- 2) 부족업체 : 무상할당량 < 인증 배출량

③ 순매도량 확인

= 매도량-매수량

※ 해당업체가 다음차 이행연도('25)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(ETRS) 및 상쇄등록부(ORS)에 등록된 '매도량 - 매수량'

④ 이월 가능 수량 산정

- 1) 잉여업체 : 순매도량의 5배
- 2) 부족업체 :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등에 따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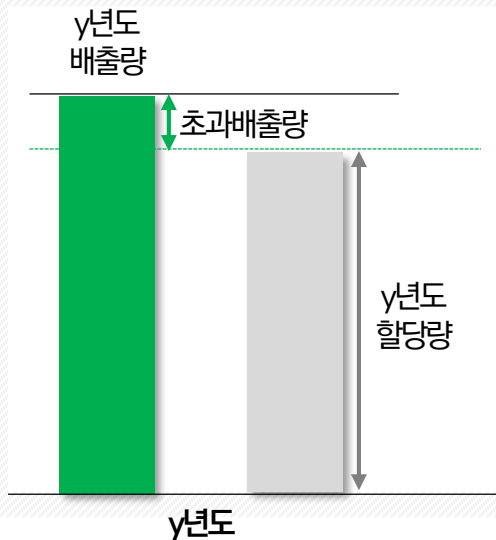
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(KAU)의 일부를 차입 가능

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차입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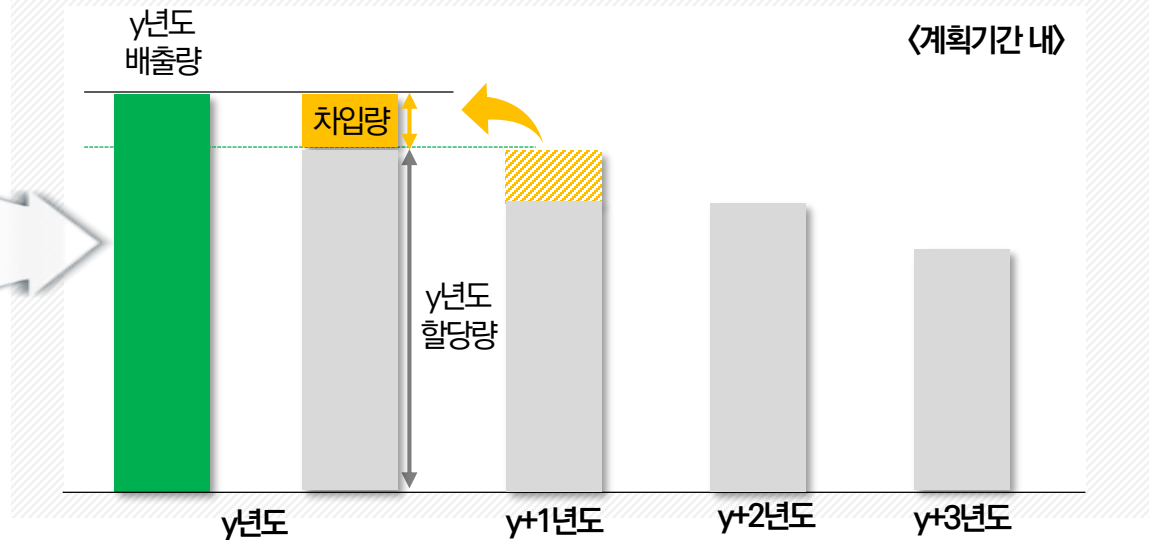
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을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,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해당 이행연도로 차입 가능

❗ 추진 근거 : 『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28조(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), 동법 시행령 제45조(배출권의 차입) 등

배출량 > 할당량 (차입 前)



배출량 = 할당량 (차입 後)

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'24.12) 등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**배출권* 수량이 부족할 시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활용 가능**

*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 할당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

[별지 제6호서식]

배출권 차입 신청서			
법인명			
법인등록번호			
계정대표자명			
법인 주소			
대표 연락처	전화		E-mail
해당이행연도			
차입연도			
배출권 차입 수량			
<p>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차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경부장관 귀하</p>			

출처 : 「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6호 서식

배출권(KAU) 차입 -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이 부족한 할당대상업체

배출권 차입 승인 기준

3차 계획기간 중 4차 이행연도('24)

-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{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- (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× 0.5)}를 곱한 값 이내

※ 차입 결과와 상관없이 배출권 추가할당량 및 할당취소량은 당초 할당량 기준으로 산정

※ 5차 이행기간의 경우, 4차 계획기간('26-'30)으로부터 차입 불가능

! 이행연도별 배출권 차입 한도(배출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)

- 1차 이행연도 :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**15% 이내**
- 2차 이행연도~(n-1)차 이행연도 :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{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- (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× 0.5)}를 곱한 값 이내

→ **(24년도 예시)** A업체가 '23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%를 차입한 경우
 ① 직전 이행연도('23)의 배출권 차입한도 10%, ② 직전 이행연도('23)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중 차입한 배출권 비율 5%, ③ $\{0.1 - (0.05 \times 0.5)\} = 0.075$ 이므로 '24년도에는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**7.5%까지** '25년도에서 차입 가능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7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'24.12) 등에 따라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쇄배출권(KCU)을 배출권 거래·제출에 활용 가능

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념

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**조직경계 밖**에서 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,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**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(목표달성 활용) 또는 거래**할 수 있는 제도

❗ 추진 근거 :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상쇄), 제30조(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증) 등

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



배출권거래법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7조,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('24.12) 등에 따라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**상쇄배출권(KCU)**을 배출권 거래·제출*에 활용 가능

* 할당대상업체별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% 한도

[별지 제23호 서식]

상쇄배출권 전환신청서	
○ 신청자 정보	
법인명(사업자명)	
사업자 등록번호	
상쇄배출권 전환 신청량	tCO ₂ -eq
<p>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8조에 따라 상쇄배출권 전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장기관의 장 귀하</p>	

출처 : 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 별지 제23호 서식

배출량 상쇄(KCU) - 3차 계획기간('21-'25)

배출권 상쇄 승인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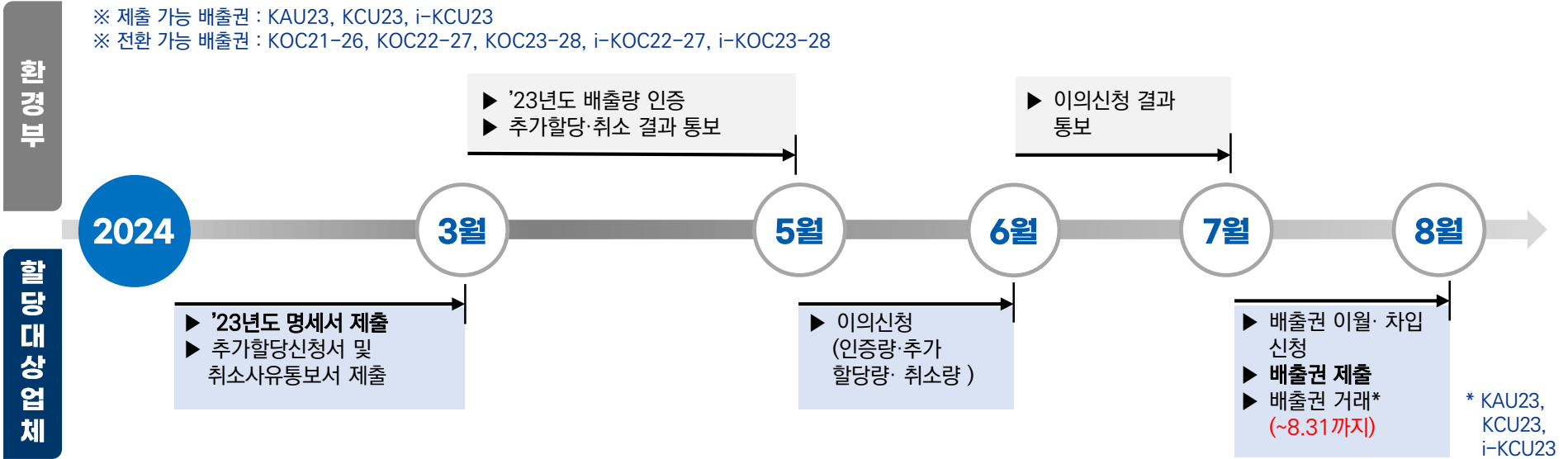
외부사업 승인 기준

- '10.04.14 이후에 시작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승인
- (국내 사업)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에서의 감축 사업에 한하여 승인 ※ 외부사업으로 기 승인된 CDM 사업 제외
- (외국 사업)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CDM 사업에 한하여 승인
- ※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적 감축기제가 마련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기제에 따른 감축사업만을 인정, CDM에서 해당 기제로 전환된 사업 포함

KOC 인증 요건

- 외부사업 승인일 또는 CDM 등록일 이후 발생한 감축량에 한해 다음 조건에 따라 KOC 인증
-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**3년 이내에 KOC 인증 신청한 경우** ※ 소규모·국소규모, 산림 분야 미적용
- 인증일로부터 **5년 이내 KC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** ※ 2023.11.09. 외부사업 지침 개정 (2년 → 5년)
- 외국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사업현황 및 감축량 발생관리 내역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함

※ 제출 가능 배출권 : KAU23, KCU23, i-KCU23
 ※ 전환 가능 배출권 : KOC21-26, KOC22-27, KOC23-28, i-KOC22-27, i-KOC23-28



1 명세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 검증 후 배출량 보고 ▪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(~3.30) ※ 추가할당, 할당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가할당신청서 또는 취소사유통보서 제출 	2 배출량 인증, 추가할당·취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량 적합성 평가 후 인증결과 통보 ※ 추가할당신청서 및 취소사유통보서 제출 업체에 추가할당량 및 할당취소량 통보 ▪ 이행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(~5월 말)
3 이의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량 인증, 추가할당, 할당취소 이의신청(NGMS) ▪ 인증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(~6.30) 	4 이의신청 결과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▪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 결정할 수 없을 시,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(~7월 말)
5 이월·차입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(ETRS) ▪ 이행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(~8.31) 	6 배출권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월·차입, 거래, 상쇄배출권(KCU)을 활용하여 배출권등록부시스템(ETRS)에 제출 ▪ 이행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(~8.31)

ETRS ORS		공지사항	자료실	지침/법령	FAQ	정보공개
공지사항						
전체		시스템공지	배출권등록부 업무공지	상채등록부 업무공지		
제목	검색					10개
총 43 건 현재페이지범위 : 1-10						
순번	제목	등록일자	조회			
43	23년 온실가스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·제출 일정 변경	2024.08.28	509			
42	※ 추후 KAU24 이월·차입·제출 일정 등 안내(25년 상반기 예상)	2024.08.28	21			
41	23년 온실가스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·제출 일정 변경	2024.08.28	466			
40	따라기한 내 신고서 제출 필요	2024.06.28	505			
39	2023년 배출권(KAU23) 증권사 이월 신청 안내	2024.06.28	575			
38	2023년 배출권(KAU23) 증권사 이월 신청 안내	2024.06.28	448			
37	23년도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 및 제출 안내_ETRS 시스템 신청방법, 24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입력방법 추가	2024.06.04	927			
36	23년도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 및 제출 안내_ETRS 시스템 신청방법, 24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입력방법 추가	2024.06.04	1,007			
35	23년도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 및 제출 안내_ETRS 시스템 신청방법, 24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입력방법 추가	2024.06.04	748			
34	KAU23 배출권거래제 이월·차입 및 제출, 거래 교육 계획(1차, 대전) 24.4.15(월), (2차, 서울) 24.4.18(목)	2024.04.08	14,565			
1 2 3 4 5 > >>						

* 배출권등록부(ETRS) 및 상채등록부(ORS) 공지사항

※ 법적 기한은 '1. 명세서 제출 후 인증 받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통보일' 또는 '2.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일' 중 늦은 날의 10일 이내이나, **ETRS 및 ORS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배출권 이월·차입 및 제출에 대한 일정,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할당대상업체 등 관계자는 관련 사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출권 제출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함**

'23년도 배출권(KAU23)의 이월·차입 및 제출 안내

1. '23년도 배출권 이월·차입 및 제출 일정

구분	이월·차입 신청	배출권 제출
신청기간	'24.7.1.(월)~8.30.(금), 13시~17시 / '24.9.2.(월), 13시~16시 ※ 주말·공휴일 제외	
승인기간	'24.8.19.(월) ~ 9.2.(월)	'24.8.26.(월) ~ 9.2.(월)

※ 100 tCO₂-eq 미만 전어량 이월도 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,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 완료 후 배출권 제출 신청은 권장

○ '23년도 배출권(KAU23, KCU23) 최종거래일 : '24.8.30.(금)

※ '23년도 배출권의 정외거래는 '24.8.30.(금)까지 배출권등록부시스템(ETRS)으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

2. '23년도 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

○ (영어업체) 해당 업체*의 3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3)과 상채 배출권(KCU23)의 순매도량**의 3배만큼만 이월

* 배출권의 이월을 신청하는 해당업체로서 권리의무 승계(분할, 합병 및 양수·양도) 발생 시 존속법인으로만 판단

** 해당업체가 다중차 이행연도(24년)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 및 상채등록부에 등록된 '매도량 - 매수량'

※ 각 이행연도의 KAU 및 KCU를 다른 KAU나 KCU 또는 KOC와 교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

○ (부족업체) 3차 이행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, 보유한 3차 이행연도 배출권(KAU23)과 상채배출권(KCU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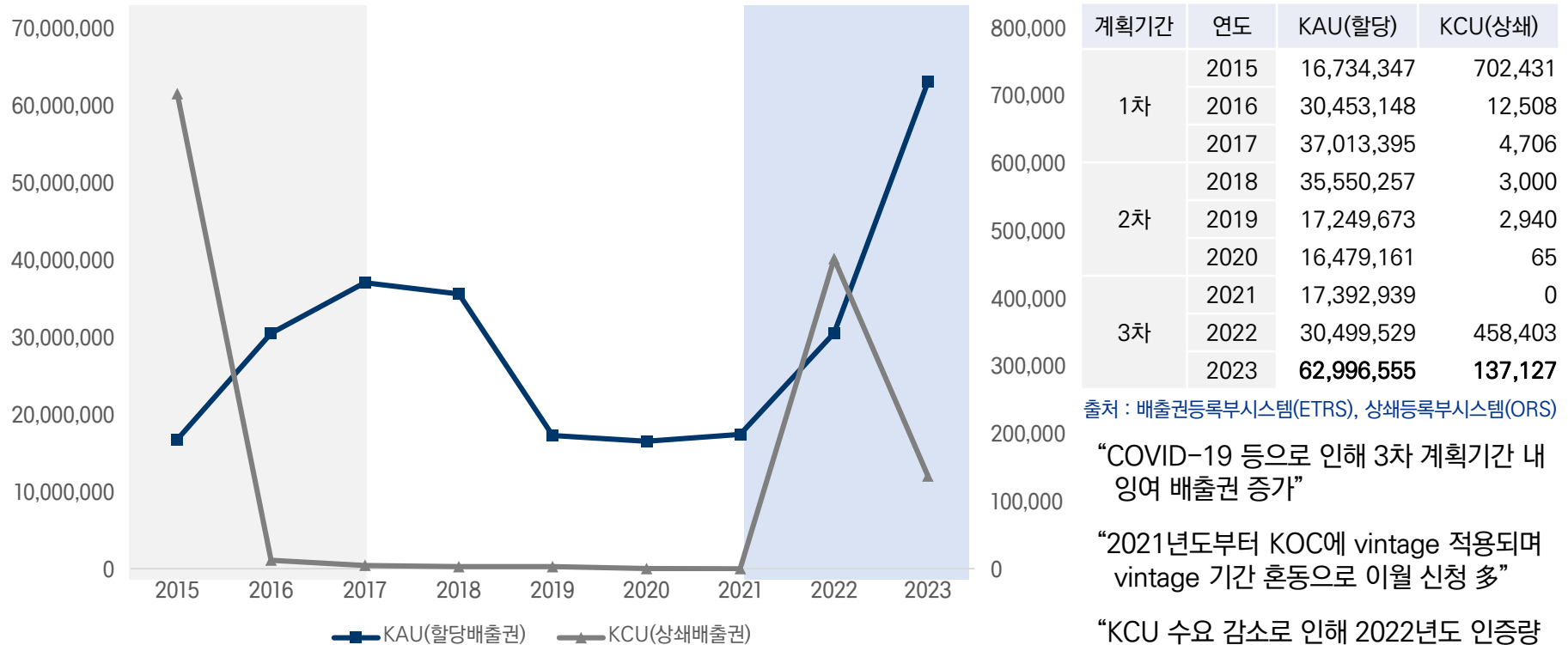
※ 각 이행연도의 KAU 및 KCU를 다른 KAU나 KCU 또는 KOC와 교환한 수량은 보유량에서 제외(단, 부족업체가 할당계획 변경(23.12.13.) 전 교환한 수량은 예외 포함)

- 배출권 거래·제출 후 잔여량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당대상업체당 총 100 tCO₂-eq 미만의 KAU·KCU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이월 신청시 승인 허용

※ 배출권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배출권의 매수·매도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등록부(ETRS)에 등록된 때 효력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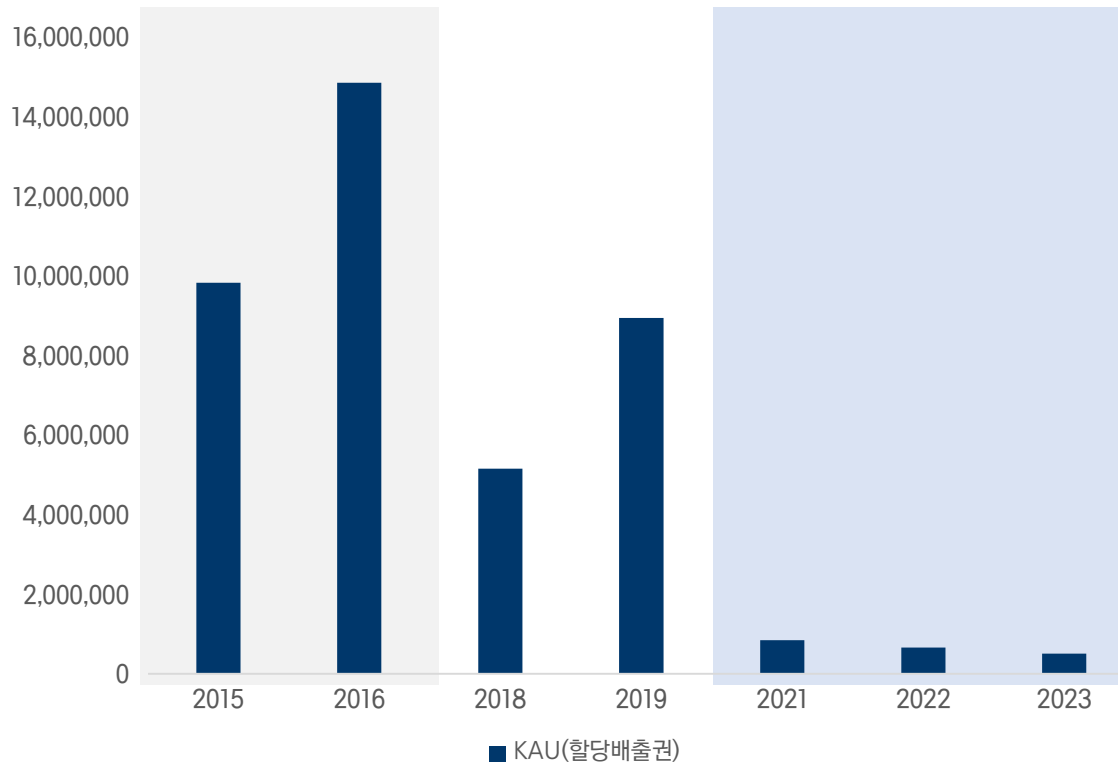
배출권거래제 1-3차 계획기간(2015-2023) 배출권(KAU, KCU) 이월 현황 분석 결과,
3차 계획기간 내 배출권 이월 수량 상승(2023년: 약 6.3백만 KAU, 약 13.7만 KCU 이월)

배출권(KAU, KCU) 이월 수량('15-'23)



배출권거래제 1-3차 계획기간(2015-2023) 배출권(KAU) 차입 현황 분석 결과,
3차 계획기간 내 배출권 차입 수량 감소(2021: 약 84만톤, 2022: 약 65만톤, 2023: 약 51만톤)

배출권(KAU) 차입 수량('15-'23)



계획기간	연도	KAU(할당배출권)
1차	2015	9,822,890
	2016	14,848,783
2차	2018	5,150,195
	2019	8,940,555
3차	2021	839,046
	2022	656,362
	2023	508,1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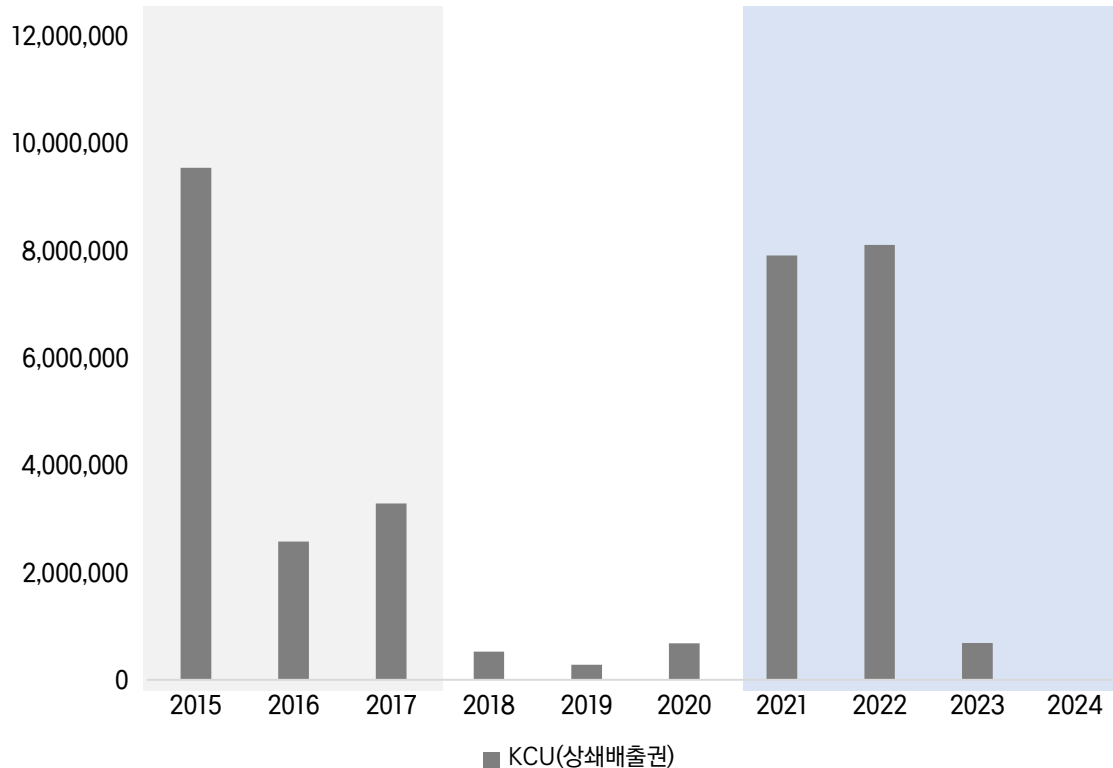
출처 : 배출권등록부시스템(ETRS), 상쇄등록부시스템(ORS)

“COVID-19 등에 인한 잉여 배출권 증가로
3차 계획기간 차입 필요성 감소”

“3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5년은
차입 불가하므로 이월 및 상쇄 배출권 등
활용하여 배출권 제출할 수 있도록 전략 필요”

배출권거래제 1-3차 계획기간(2015-2023) 상쇄배출권(KCU) 발행 현황 분석 결과,
3차 계획기간 내 상쇄배출권 발행 지속 감소(2022: 약 800만톤, 2023: 약 73만톤, 2024: 약 1천톤)

상쇄배출권(KCU) 발행 수량('15-'24)



계획기간	연도	KCU(상쇄배출권)
1차	2015	9,535,253
	2016	2,571,242
	2017	3,282,243
2차	2018	525,524
	2019	279,174
	2020	679,617
3차	2021	7,899,685
	2022	8,098,303
	2023	686,216
	2024	1,047

출처 : 배출권등록부시스템(ETRS), 상쇄등록부시스템(ORS)

“3차 계획기간 i-KCU 발행 증가에 따라 '21-'22 발행 증가”

“'23-'24 i-KCU 미발행 및 경기 침체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수요 감소에 따라 발행량 급격히 감소”

2024년 4월 초 기준, 36개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(개발 중 14곳, 도입 고려 중 8곳)
전세계 배출량의 17.7% 커버, 범국가(EU) 단위 1개, 국가 단위 13개, 지역 단위 22개

출처 : ICAP, Emissions Trading Worldwide (2024)



범국가단위 : 1개
EU-ETS
(+ 스위스 ETS 연계)



국가단위 : 13개
대한민국, 오스트리아, 독일, 카자흐스탄,
몬테네그로, 영국, 멕시코, 중국, 뉴질랜드,
인도네시아, 스위스, 호주, 캐나다



지방 및 주 단위 : 16개
미국(RGGI, 캘리포니아, 워싱턴,
메사추세츠), 캐나다(노바스코샤, 퀘벡,
서스캐처원, 온타리오, 뉴펀들랜드 래브라도,
뉴브런즈윅, 브리티시 컬럼비아, 알버타),
일본(사이타마), 중국(푸젠, 광둥, 후베이)



도시 단위 : 6개
베이징, 충칭, 상하이,
선전, 톈진, 도요

Under Development(14)

Colombia, EU buildings and road transport ETS, Russian Federation - Sakhalin, Türkiye, Ukraine, USA - Pennsylvania/New York/Colorado/Oregon, Vietnam, Brazil, Canada Oil and Gas ETS, EU ETS 2, India, Japan,

Under Consideration(8)

Chile, Malaysia, Pakistan, Taiwan, Thailand, USA - Maryland, Argentina, Philippines

구분	EU	한국	중국
시작연도	2005년	2015년	2021년
커버율	38%(2021년 기준)	74%	40% (추정)
온실가스	CO ₂ , HFCs, N ₂ O, PFCs, SF ₆	CO ₂ , CH ₄ , N ₂ O, HFCs, PFCs, SF ₆	CO ₂
적용 부문	(4) 국내항공, 산업, 발전+해운(24)	(6) 전환, 산업, 수송, 폐기물, 건물, 공공 기타 → (26~) 발전, 발전 외	(1) 발전
할당대상업체	8,640개 시설, 390개 항공사(2022년 기준) * (24~) 선박회사 할당대상업체 포함	783개(2024년 기준)	2,257개(2022년 기준)
할당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7% 유상할당 무상할당 2026년부터 단계적 폐지 예정 2021년에 업데이트된 54개 BM계수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, 학교, 병원, 대중교통운영자 및 Carbon leakage 우려되는 사업장은 무상할당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의 10% 이내 유상할당 원칙 부문 및 업종별 특성 고려한 GF+BM 할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부 무상할당(사전할당), 사후 조정 향후 유상할당 도입 및 점진적 확대 예정 BM계수 활용하여 할당
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물/선물/경매 및 선도거래 방식 거래 시장참여자 : 할당대상업체, 그 외 업체 시장안정화 조치 : 백로딩 + MSR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물/경매 방식 거래 시장참여자 : 할당대상업체, 그 외 시장조성자 시장안정화 조치 : 예비분, 추가할당 및 최저가격설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물 방식 거래 시장참여자 : 할당대상업체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사항 마련 중
유연성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월 무제한 허용 차입 및 상쇄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월 및 차입 허용 국내외 상쇄(인증량의 5%)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입 부족분의 최대 50%까지 허용 국내 상쇄(인증량의 5%) 허용 예정

배출권거래제 이월 제한 현황

구분	한국 ETS	EU ETS	뉴질랜드 ETS	RGGI	캘리포니아
이월	순매도량 기준 수량 제한 *부족업체 전량 이월	무제한 허용	무제한 허용	무제한 허용	이월량 제한

자료 : ICAP, Emissions Trading Worldwide 2024 Status Report

배출권거래제 차입 현황

구분	한국 ETS	EU ETS	뉴질랜드 ETS	RGGI	캘리포니아
차입	계획기간별 기준 준수	비허용	비허용	비허용	비허용

자료 : ICAP, Emissions Trading Worldwide 2024 Status Report

배출권거래제 상쇄 현황

구분	한국 ETS	EU ETS	뉴질랜드 ETS	RGGI	캘리포니아
상쇄	인증량의 5% 허용	비허용	비허용 *단, 정부가 승인한 높은 건전성의 국외 감축실적 활용 고려 가능	인증량의 3.3% 허용	인증량의 4% 허용 *'26-'30은 인증량의 6% 허용

자료 : ICAP, Emissions Trading Worldwide 2024 Status Report

현재 약 780여개 기업(사업장)을 대상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3.5%를 커버
6대 온실가스,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

	1차 계획기간			2차 계획기간			3차 계획기간		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	
이월 승인	수량 제한 없음			i) 순매도량의 3배('18) ii) 연평균 배출량 12.5만톤 이상 업체: 7.5만 KAU iii) 2.5만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: 1.5만 KAU ↓ i) 순매도량의 2배('19) ii) 연평균 배출량 12.5만톤 이상 업체: 5만 KAU iii) 2.5만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: 1만 KAU ※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 이월 제한 없음			순매도량의 2배		순매도량의 1배		i) 잉여업체: 순매도량*3 ii) 부족업체: 전량 이월		i) 잉여업체: 순매도량*5 ii) 부족업체: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전량 이월
차입 승인	제출배출권의 10% 이내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 이행연도: 제출 배출권의 15% 이내 2차 ~ (n-1)차 이행연도 :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{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- (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× 0.5)}를 곱한 값 이내 									
상쇄 승인	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%						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% 이내						

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

'25년 6월 내로 수립될 할당계획에서 배출허용총량, 유무상 할당비율, 할당방식, 이월·차입·상쇄 등 세부기준 규정 예정

② 이월제한 완화

4차 계획기간에는 3차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,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

③ 상쇄한도 설정

ETS 非대상 부문의 탄소감축 유도, NDC 달성 가능성, 국제감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4차 계획기간 적정 상쇄한도 설정 +) 제도 내실화를 위한 외부사업 방법론의 건전성 검토

④ 이월제한 폐지

5차 계획기간('31~'35)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간 이월 제한 완전 폐지를 검토하는 등 배출권 시장에서 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모색 +) 5차 계획기간 지표배출권 폐지 함께 고려

Q&A

KRIC Korea Research Institute
on Climate Change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